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예찬 의원 대표발의】



2023. 6. 2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65호로 2023년 5월 26일 이예찬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한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 및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위원회 기능 개정(안 제2조)
- 나. 위원회 구성 개정(안 제3조)
- 다. 위원회 직무 개정(안 제4조제3항)
- 라.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개정(안 제8조제3항)
- 마.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신설(안 제11조)
- 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6. 7.~ 6. 11.):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도시시설의 안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회의록의 작성 관리 의무와 공개 의무를 명시해 위원회 심의 과정에 대하여 구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증진시키고 자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해 공정한 기술심의를 통한 도시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1조에서는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명시하였고,
- 안 제2조에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하여 기술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위원의 자격을 일부 정비하였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도록 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에서는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원활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 조례안은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기술자문위원회) ①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④ (생략)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략)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 4 (생략)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 7 (생략)

⑥ ~ ⑪ (생략)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 ④ (생략)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 등(지방자치단체의 설계와 같은 수준 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 변경을 하였을 때에는 그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⑥ 제5항의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⑦ ~ ⑨ (생략)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제18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절차 및 방법,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